



도로법

[시행 2019. 3. 19] [법률 제15996호, 2018. 12. 18, 타법개정]

국토교통부(간선도로과-도로의 구조·시설) 044-201-3893
 국토교통부(도로정책과) 044-201-3884
 국토교통부(첨단도로안전과-차량의 운행제한) 044-201-3931
 국토교통부(도로운영과-점용, 접도구역, 연결허가) 044-201-3914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도로"란 차도, 보도(步道), 자전거도로, 측도(側道), 터널, 교량, 육교 등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**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,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.
2. "도로의 부속물"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,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.
 - 가. 주차장, 버스정류시설,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
 - 나. 시선유도표지, 중앙분리대,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
 - 다. 통행료 징수시설, 도로관제시설,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
 - 라.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
 - 마. 낙석방지시설, 제설시설,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, 도로환경의 개선·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
 - 바.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3. "국가도로망"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,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.
4. "국가간선도로망"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.
5. "도로관리청"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, 건설,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 - 가. 국토교통부장관
 - 나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"행정청"이라 한다)
6. "도로구역"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.
7. "도로공사"란 도로의 신설, 확장, 개량 및 보수(補修)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.
8. "도로의 유지·관리"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(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) 활동을 말한다.
9. "타공작물"이란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발휘하는 둑, 호안(護岸),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, 횡단도로, 가로수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.

부칙 <제15996호, 2018. 12. 18.> (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)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생략

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0조제1항 중 "시·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"을 "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, 시·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"으로 한다.

③부터 ⑦까지 생략



도로법 시행령

[시행 2019. 3. 19] [대통령령 제29634호, 2019. 3. 19, 타법개정]

국토교통부(간선도로과-도로의 구조·시설) 044-201-3893
 국토교통부(첨단도로환경과) 044-201-3924
 국토교통부(도로정책과) 044-201-3879
 국토교통부(도로운영과-점용, 접도구역, 연결허가) 044-201-3914
 국토교통부(첨단도로안전과-차량의 운행제한) 044-201-3931

제2조(도로) 「도로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"차도, 보도(步道), 자전거도로, 측도(側道), 터널, 교량,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.

1. 차도·보도·자전거도로 및 측도
2. 터널·교량·지하도 및 육교(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)
3. 궤도
4. 옹벽·배수로·길도랑·지하통로 및 무넙기시설
5.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

부칙 <제29634호, 2019. 3. 19.> (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)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
④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중전의 제1항)제2호 중 "제2항"을 "제3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항제2호"를 "제2항제2호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"를 "국가지원지방도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한다.
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.

1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,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변경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교통혼잡 실태 등의 조사
2. 제87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

⑤부터 ⑧까지 생략

개발행위 허가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5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[] 공작물설치 [] 토지형질변경 [] 토석채취 [] 토지분할 [] 물건적치

성명 서울에너지공사	법인등록번호 250171-0030773
신청인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	
(우편번호 : 158-050) (전화번호 : 02-2640-5131)	

허가신청 사항


위치(지번)	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62,701 / 구의동 627-9,572	지목	하천, 제방
용도지역	도시지역, 자연녹지지역, 도로, 하천, 과밀억제권역, 오염행위제한지역, 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, 가스공급설비, 수도공급시설, 가축사육제한구역, 교육환경보호구역, 대공방어협조구역, 상수원보호구역, 중점경관관리구역, 하천구역	용도지구	역사문화미관지구

신청 내용	공작물 설치	신청면적	270.64㎡ (자양고가도로 교량측면)	종량	14.495ton	
		공작물구조	경량철골조	부피		
	토지형질 변경	토지현황	경사도		토질	
			토석매장량			
		입목식재 현황	주요수종			
			입목지		무입목지	
	토석채취	신청면적		부피		
		입목벌채 수종		나무 수	그루	
	토지분할	종전면적		분할면적		
	물건적치	종량		부피		
품명			평균적치량			
적치기간			년 월 일 부터	년 월 일	까지 (개월간)	

개발행위목적 태양광발전

사업기간 착공 2018년 11월 01일, 준공 2019년 02월 28일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.

2018년 09월 10일
신청인 서울에너지공사 (서명) 

광진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	-----------